

#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3 ~ 7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3. 8. 26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○ 영관급 이상 예비역 군인, 한국전력 거창지점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확대 필요에 따라 위원 정수를 늘리고,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2조)

나.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정수 확대 및 위원명칭 변경, 조직개편사항 반영함(안 제3조)

(1) 위원정수 확대 : 15명 내 ⇒ 20명 이내

(2) 위원명칭 변경 : 거창교육청교육장 ⇒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

(3) 재난관리과장 ⇒ 안전총괄과장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

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, 제17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3. 6. 10. ~ 6. 30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”를 “제9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통합방위 대비책 :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
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  - 가.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
  - 나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·계몽 및 지원 대책
  - 다. 취약지역 대비책
  - 라. 통제구역 설정
  - 마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  - 가.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 - 나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

제3조제1항 중 “15명 내”를 “20명 이내”로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한 자로 한다.”를 “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경상남도거창교육청교육장”을 “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“재난관리과장”을 “안전총괄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”을 “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”를 “통합방위지원본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주민신고태세”를 “주민신고체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·제6호를 제7호·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·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
6.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

제4조제4항·제5항 중 “종합상황실”을 “상황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군, 읍·면지원본부”를 “통합방위지원본부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<u>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심의사항)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통합방위 대비책</li> <li>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</li> <li>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영 및 지원 대책</li> <li>4. 통제구역 설정</li> <li>5.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</li> </ol>	<p><u>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제9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-</u> -----</p> <p>제2조(심의사항)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통합방위 대비책 :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</li> <li>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</li> <li>나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·계몽 및 지원 대책</li> <li>다. 취약지역 대비책</li> <li>라. 통제구역 설정</li> <li>마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</li> </ol> </li> <li>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영 및 지원 대책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나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/li> <li>4.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<u>15명</u> 내로 구성하되,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<u>때</u>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<u>정한</u> <u>자로 한다.</u>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경상남도거창교육청교육장</u></p> <p>8. ~ 10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</p> <p>1.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: <u>재난관리과장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 ----- -----<u>20명 이내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경우</u>----- -----</p> <p>② -----<u>해당</u> <u>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</u></p> <p>8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<u>안전총괄과장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 군수, 읍·면장 소속 하에 군, 읍·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.</p> <p>② <u>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</u>은 부군수가 되고, 읍·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·면장이 된다.</p>	<p>제4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 ----- -----</p> <p>② <u>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<u>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"지원본부"라 한다)</u>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·시행</p> <p>2.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</p> <p>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</p> <p>4. 통합방위 취약지의 <u>주민신고태세</u> 확립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5.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의 시행</p> <p>6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</p> <p>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<u>종합상황실</u>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⑤ <u>종합상황실</u>은 실장과 10명 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,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그 밖에 <u>군, 읍·면지원본부</u>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</p>	<p>③ <u>통합방위지원본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 <p>4. -----<u>주민신고체제</u>---</p> <p>5. <u>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</u></p> <p>6. <u>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</u></p> <p>7. -----</p> <p>8. -----</p> <p>④ -----<u>상황실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<u>상황실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<u>통합방위지원본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